연말정산 소득 · 세액공제 요건표

구 분		공제요건				비 고
		나이요건*	소득요건*	동거 요건		
				주민등록동거	일시퇴거 허용	
기본공제	본 인	×	×	×		
	배 우 자	×	○	×		
	직계존속	60세 이상	○	△ (주거형편상 별거 허용)		1958.12.31. 이전
	직계비속, 동거입양자	20세 이하	○	×		1998. 1. 1. 이후
	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	×	○	×		
	형제자매	60세 이상 20세 이하	○	○	○	1958.12.31. 이전 1998. 1. 1. 이후
	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	×	○	○	○	
	위탁아동	18세 미만	○			
추가공제	장 애 인	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				
	경로우대	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				1948.12.31. 이전
	부 녀 자	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(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)				
	한 부 모	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(20세 이하)가 있는자				
연금보험료 공제		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	

* 나이요건 :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당해 과세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
* 소득요건 :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)

구 분		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		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	비 고
		나이요건	소득요건		
특별소득공제	보 험 료	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(건강 · 노인장기요양 · 고용보험료)			
	주택자금공제	–	–	○	본인만 가능
그 밖의 소득공제	개인연금저축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
	주택마련저축	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			
	신용카드 등	×	○	○	형제자매 제외
자녀세액공제		○	○	–	기본공제대상 자녀(입양자 · 위탁아동 포함, 손자녀는 제외)
연금계좌세액공제		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(배우자,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)			
특별세액공제	보장성보험료	○	○	○	
	의 료 비	×	×	○	
	교 육 비	×	○	○	직계존속 제외 *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 제한 없으며, 직계존속도 가능
	기 부 금	×	○	×	기본공제대상자 * 정치자금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만 가능
표준세액공제		특별소득공제, 특별세액공제,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(13만원) 적용			

국세청 WWW.NTS.GO.KR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

(www.hometax.go.kr ➔ 조회/발급 ➔ 연말정산간소화)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·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.

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세요!

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

① 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

☞ 특히,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,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소득자 스스로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② 근로소득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

☞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
③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도 있음

☞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.
이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이 해당 소득·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수집해야 합니다.

④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

☞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소득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.

☞ 19세 미만(2000.1.1. 이후 출생)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「자녀자료 조회신청」 후 조회 가능하며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.

☞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 제공에 동의하였으나 그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없는 경우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.

「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」 운영

(www.hometax.go.kr ➔ 신청/제출 ➔ 연말정산간소화)

-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월 17일(예정)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시거나, 홈택스(신청/제출 〉 연말정산간소화 〉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)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(이용시간 – 08 : 00 ~ 20 : 00)

- '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'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하여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합니다.

- 의료기관이 자료를 1.15. ~1.18.에 추가제출 할 경우 1월 20일부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- 다만,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 20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 불편하시더라도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개별 안내 예정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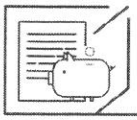

2018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

※ 자세한 사항은 p.294 참조
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>2017년</th><th>2018년</th></tr>
<tr><td>소득세 최고세율 인상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1,200만 이하</td><td>6%</td></tr>
<tr><td>1,200~4,600만원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4,600~8,800만원</td><td>24%</td></tr>
<tr><td>8,800~1억5천만원</td><td>35%</td></tr>
<tr><td>1억5천만원~5억원</td><td>38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</td><td>40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
<table>
<tr><th>과세표준</th><th>세율</th></tr>
<tr><td>1,200만 이하</td><td>6%</td></tr>
<tr><td>1,200~4,600만원</td><td>15%</td></tr>
<tr><td>4,600~8,800만원</td><td>24%</td></tr>
<tr><td>8,800~1억5천만원</td><td>35%</td></tr>
<tr><td>1억5천만원~3억원</td><td>38%</td></tr>
<tr><td>3억원~5억원</td><td>40%</td></tr>
<tr><td>5억원 초과</td><td>42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보편적 아동수당과 자녀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</td><td>□ 자녀 세제지원
○ 부양가족 소득공제 : 1인당 150만원
○ 자녀세액공제
- 1인당 15만원(셋째부터 30만원) 공제
-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
- 출산·입양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</td><td>□ 아동수당과 최대한 중복적용
○ (좌 동)
○ 자녀세액공제
- '18년 말까지 좌동('19년부터 만6세 미만 폐지)
- <폐 지>
- (좌 동)</td></tr>
<tr><td>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</td><td>○ 공제대상 의료비
-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§40①*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
<추 가>
* 월 한도 내의 재가·시설급여 → 본인 일부부담 (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)</td><td>○ 공제대상 의료비 추가
- (좌 동)
- (좌 동)
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§40②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</td></tr>
<tr><td>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</td><td>□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
○ 생명·상해·손해보험 등
○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등에 따른 공제
<신 설></td><td>□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추가
(좌 동)
○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*
*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</td></tr>
<tr><td>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 확대</td><td>□ 엔젤투자 소득공제
○ 소득공제율
<table>
<tr><td>1천5백만원 이하분</td><td>100%</td></tr>
<tr><td>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</td><td>50%</td></tr>
<tr><td>5천만원 초과분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</td><td>□ 소득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
○ 소득공제율 상향
<table>
<tr><td>3천만원 이하분</td><td>100%</td></tr>
<tr><td>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</td><td>70%</td></tr>
<tr><td>5천만원 초과분</td><td>30%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구 분	2017년	2018년
벤처기업 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및 투자한도 신설	□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 ① 신탁재산의 50%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	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① 신탁재산의 15% 이상을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 인수 ② 신탁재산의 35%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이내 코스닥상장 중소·중견 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⑤ 투자금액 한도 3천만원
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신설	<신 설>	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○ (대상자) 벤처기업 임직원 ○ (한도) 연간 2천만원 ○ (적용기한) '20.12.31까지 부여받은 분
창업·벤처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소득공제 확대	□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에 대해 소득공제 ○ (한도) 연간 400만원	□ 벤처기업 등*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* 벤처·창업 기업(조특법 §16 ① 3) ○ (한도) 연간 1,500만원
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	○ (공제율) 10%	○ 공제율 차등 인상 - 총급여 5.5천만원 이하* : 12% *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제외 - 총급여 5.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: 10% *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
도서·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	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○ (공제대상)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○ (공제율) - 신용카드 : 15% 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: 30% -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분 : 40% <신 설> ○ (한도) 200 ~ 300만원 -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원 추가 ○ (적용기한) '18.12.31	□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도서·공연비 지출분 추가 공제 신설 ○ (좌 동) ○ (공제율) (좌 동) 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·공연비* 지출분 : 30% *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과 「출판문화산업진흥법」 제2조제3호 ~ 제5호까지의 간행물 ○ (좌 동) 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도서·공연비 지출분도 100만원 추가 ○ (좌 동)

<적용시기> (도서.공연비) '18. 7. 1.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

구 분	2017년	2018년
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	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○ (감면율) 70% ○ (감면한도) 연간 150만원 ○ (감면기간) 취업 후 3년간 ○ (적용기한) '18.12.31.	□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감면 확대 ○ (감면율) 90%(청년), 70%(그 외) ○ (좌 동) ○ (감면기간) 취업 후 5년간(청년만) ○ (적용기한) '21.12.31.(청년만) * 취업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
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령 확대	□ 청년 연령 ○ 15세 ~ 29세	□ 청년 연령범위 확대 ○ 15세 ~ 34세

참고

2018년 귀속부터 적용 예정인 세법개정(안)

-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
  - '기부금 이월공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
    (13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한 분부터)
    <적용시기> '19.1.1.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
-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 공제 신설
  -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공제(200만원한도)
    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
- 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확대
  -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
    <적용시기>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

Ⅳ 특별소득공제 (소법 §52)

* 특별소득공제는 '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'가 받을 수 있으며,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'그 밖의 소득공제'는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해당 조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음

<특별소득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 요약>

소득공제		공제항목	공제한도액
보험료	건강보험, 고용보험, 노인장기요양보험	본인부담 보험료	전액
주택자금	① 주택마련저축	청약저축·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(240만원 한도),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(180만원 한도)의 40%	연 300만원 [①+②]
	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	무주택 세대의 세대주(세대원포함)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%	
	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	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세대의 세대주(세대원 포함)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	연 300만원~1,800만원 [①+②+③]
기부금	이월분	'13.12.31.이전 기부금 지출액(지정)	공제한도 내 이월 기부금
개인연금저축	납입액	'00.12.31 이전 가입(납입액의 40%)	연 72만원
투자조합출자 등 공제	'17년 까지 투자	투자금액의 10%(개인이 벤처기업·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%, 50, 30%)	종합소득금액의 50%
	'18년 이후 투자	투자금액의 10%(개인이 벤처기업·벤처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100%, 70, 30%)	종합소득금액의 50% (조특법 제16조제1항제2호 벤처투자신탁의 공제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	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직불카드, 선불카드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(중고차 구입금액의 10% 포함)이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한 사용액의 15%(현금영수증·직불카드·선불카드, 도서·공연 사용분 : 30%, 전통시장 사용분·대중교통이용분 : 40%)	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: (연 300만원, 총급여액 20%) 중 적은 금액 7천만원~1.2억원 : 250만원 1.2억원 초과 : 200만원 +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원 도서·공연 사용분 100만원 추가(최대 600만원)
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	공제부금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	근로소득금액별 차등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~7천만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

소득공제		공제항목	공제한도액
우리사주조합출연금	출연금	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	연 400만원 (벤처기업 1,500만원)
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공제	임금삭감액	(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-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) × 100분의 50	연 1,000만원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	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	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(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)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(연 600만원 한도)의 40%	연 240만원

7. 특별세액공제 (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)(소법 §59의4)

< 특별세액공제 요약 >

세액공제		공제항목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공제율
보험료	보장성보험	생명보험,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	연 100만원	12%
	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	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	연 100만원	15%
의료비	㉮ 본인·장애인·만 65세 이상자, 난임시술비,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	의료비, 의약품, 안경 구입비(50만원 이내) 등 다만, 미용·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	총급여 3% 초과분 공제대상 ㉮ 한도 제한 없음 ㉯ 연 700만원 한도	15% (난임시술비 20%)
	㉯ 그 외 부양가족			
교육비	본인	대학원, 대학, 시간제과정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, 학자금대출 상환액 등	전 액	15%
	취학전 아동	어린이집·유치원·학원·체육시설 수업료, 급식비, 방과후과정 수업료(도서구입비 포함)	1명당 연 300만원	
	초·중·고등학생	등록금, 입학금, 급식비,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, 체험학습비(연 30만원), 교복구입비(중·고등학생 연50만원)	1명당 연 300만원	
	대학생	등록금, 입학금	1명당 연 900만원	
	장애인	장애인 재활교육비	전 액	

세액공제			공제항목	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	공제율
기부금	정치자금 기부금		정당기부 등	근로소득금액 전액	10만원 이하 (100/110) 10만원 초과 (15%, 25%)
	법정기부금		국방헌금, 위문금품 등	근로소득금액 전액	법정 + 우리사주 + 지정 15%(30%)
	우리사주조합기부금		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	근로소득금액의 30%	
	지정기부금	종교단체 외	지정된 사회·복지·문화·예술단체	근로소득금액의 30%	
		종교단체	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	근로소득금액의 10%	